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8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박상혁 · 백혜련 · 정준호
이용우 · 이강일 · 이연희
김주영 · 이해식 · 허영
조승래 · 박민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

제4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회일 1주 전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등록된 사채권자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91條(召集權者) ① ~ ③ (생략) ④ <u>無記名式の 債券을 가진 者는 그 債券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前2項의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u>	第491條(召集權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u>
第492條(議決權) ① (생략) ② <u>無記名式の 債券을 가진 者는 會日로부터 1週間前에 債券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그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u>	第492條(議決權) ① (현행과 같음) ② <u>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는</u>

는 회일 1주 전에 같은 법 제3
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사
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
리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채
권의 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